

##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4월 14일에서 21일까지 8일간 제188회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다. 결산검사 위원은 구의원 1명과 외부위원 3명(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4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표위원으로 김창현 구의원, 김용민 세무사, 채종철 세무사, 김찬래 공인회계사를 선임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4월 23일에서 5월 22일까지 2014년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분석하여 감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한편 15, 16일에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회기에는 「201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17, 20일 총 2차에 거쳐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였다. 안문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구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민들이 구의회에 거는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14일, 제188회 임시회 개회식을 진행하고 있는 안문환 부의장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제188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계획서를 채택하였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1일에서 19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는 김기란 의회운영위원장

##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창현 의원

광진구의회 김창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라선거구)이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김창현 대표위원은 ‘광진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결산검사를 통해 집행부가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잘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 제188회 임시회 상정 안건

- ①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②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③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④ 201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함
- ⑤ 조례안 8건
  - 1)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구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 증대와 문화정책의 지역 분권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광진문화재단을 설립, 문화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광진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5년도 「복지인력 확충대책」 및 「외국인 주민 공직임용 확대 지침」에 따라 차단체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정원 증원 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조직관리 기준에 맞는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이 제 개정되고, 별정직공무원 일부가 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 인사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을 축소 등 위임에 따라 근거 법령에 맞게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수수료 부과로 쓰레기 원천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우리구의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1996년 최초가격 형성 후 사실상 동결되었으나 쓰레기 처리비용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위원 위촉 구성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
  - 8)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기존에 서울시 시범사업이었던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사업이 지속사업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